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1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 - 8후원기금의 조성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복지 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농촌전문인력을 육성코자 함.

4. 주요 골자

- 기금의 조성 : 충청북도의 출연금, 기관 단체, 독지가의 성금, 회원의 회비
- 기금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 농촌진흥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금의 관리 : 적립 기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그 증식금으로 사업 추진
- 운용기금의 사용 : 농촌후계세대 육성 및 농촌지도자 양성

5. 검토 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UR 협상과 WTO 출범 등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대외 경쟁력을
잃고, 농촌 경제의 침체와 농촌 지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촌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복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 - H 후원회의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것 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로 하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 - H 후원회의 기금 조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농촌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방법,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과 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전문인력의 영농 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전개 및 세소득
작목 개발 보급과 새기술 실천을 위한 과제 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촌의 전문인력 육성
측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첨부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